

# 자원순환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## (문진국 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11954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18. 2. 13.

발의자 : 문진국 · 신상진 · 김현아  
임이자 · 이종명 · 정갑윤  
김용태 · 경대수 · 주광덕  
성일종 · 송희경 · 김석기  
윤한홍 의원(13인)

###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·광역시장·특별자치시장·도지사·특별자치도지사에게 국가 자원순환기본계획에 대한 연차별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하도록 하고, 시장·군수·구청장에게 시·도의 시행 계획에 따른 연차별 집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음.

시행계획 및 집행계획의 수립·승인에 소요되는 시간을 고려할 때, 이를 매년 반복적으로 수립하는 것은 비효율적일 뿐 아니라 불필요한 행정비용을 지속적으로 발생시킬 우려가 있어 시행계획과 집행계획의 수립 주기를 국가 자원순환기본계획의 수립 주기인 10년과 일치시키도록 변경하고자 하는 것임(안 제12조제1항, 제2항 및 제3항).

또한, 국가의 중장기·단계별 자원순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18개 업종의 폐기물 다량배출 사업장에 대해 사업장별 자원순환 목표를 설정·관리하고자 자원순환 성과관리 제도가 도입되었는데, 현행법은 모

든 사업장폐기물배출자에 적용하는 것으로 오인될 여지가 있음.

이에, 사업자 자원순환 성과관리의 적용 대상이 되는 사업장의 업종 및 사업장폐기물 배출 규모를 환경부령으로 정하도록 함으로써 당초의 입법 취지를 명확히 하고자 하는 것임(안 제16조제1항).

## 자원순환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자원순환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2조제1항 중 “소관”을 “10년마다 소관”으로, “연차별 시행계획”을 “시행계획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“관할지역”을 “10년마다 관할지역”으로, “연차별 시행계획”을 “시행계획”으로 하며, 같은 조 제3항 중 “관할지역”을 “10년마다 관할지역”으로, “연차별 집행계획”을 “집행계획”으로 한다.

제16조제1항 중 “「폐기물관리법」 제17조에 따른 사업장폐기물배출자”를 “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업종 및 규모 이상의 사업장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자”로 한다.

## 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12조(시행계획 및 집행계획의 수립·시행)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<u>소관</u> 사항에 대하여 자원순환사회로의 전환 촉진을 위한 투자계획을 포함한 기본계획의 <u>연차별 시행계획</u>을 수립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고 시행하여야 한다.</p> <p>② 특별시장·광역시장·특별자치시장·도지사·특별자치도지사(이하 “시·도지사”라 한다)는 <u>관할지역</u>에 대하여 자원순환사회로의 전환 촉진을 위한 투자계획을 포함한 기본계획의 <u>연차별 시행계획</u>을 수립하여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시행하여야 한다. 승인을 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.</p> <p>③ 시장·군수·구청장(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. 이하 같다)은 <u>관할지역</u>의 여건을 고려하여 제2항에 따른 시행계획의 <u>연차별 집행계획</u>을 수립하여 시·도</p>	<p>제12조(시행계획 및 집행계획의 수립·시행) ① ----- ----- <u>10년마다 소관</u> -- ----- ----- ----- <u>시행계획</u>----- ----- -----.</p> <p>② ----- ----- ----- --- <u>10년마다 관할지역</u>----- ----- ----- <u>시행계획</u>----- ----- -----.</p> <p>③ ----- ----- -<u>10년마다 관할지역</u>----- ----- <u>집행계획</u>-----</p>

